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34
----------	-------

발의연월일 : 2022. 11. 1.

발의자 : 강득구 · 강민정 · 고영인

박주민 · 백혜련 · 용혜인

윤영덕 · 이형석 · 정성호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보고서에는 개선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행점검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내용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여 권고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 제5항 및 제6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 중 “국회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회는”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 ④ (생략)</p> <p>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u>국회에</u>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u>국회는</u> 제5항에 따라 보고 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⑦ ~ ⑪ (생략)</p>	<p>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u>-----.</p> <p>⑥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u>-----</p> <p>-----</p> <p>-----</p> <p>-----.</p> <p>⑦ ~ ⑪ (현행과 같음)</p>